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. 3. 23 선고 2019가단2402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2. 2. 16 선고 2021나308526 판결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. 3. 23 선고 2019가단24025 판결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1. D

2. E

3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진

변론 종결 2021. 1. 19

판결 선고 2021. 3. 23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, 피고들과 G 사이에 체결된 2015. 5. 10.자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 D은 위 주식 3,000주, 피고 E은 위 주식 2,250주, 피고 F은 위 주식 100주에 관하여 G에게 각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.

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, 피고 D 및 E과 G 사이에 체결된 2015.5. 10.자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 D은 위 주식 3,000주, 피고 E은 위 주식 2,250주에 관하여 G에게 각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H 주식회사(이하 '데라고 한다)는 G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, 이에 관하여 2010. 3. 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32264호로 'G은 H에게 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05. 1. 12.부터 2010. 4. 1.까지는 연 1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.

위 지급 명령은 2010. 4. 16.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는 2018. 11. 20. H로부터 H의 G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, 원고와 H가 2018. 12. 24.

G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.

다. 2014년경 I 주식회사(이하 T라고 한다)의 주식은 G이 8,550주, J이 1,000주, K이 45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, L 주식회사(이하 'L'라고 한다)의 주식은 G이 8,250주, J이 1,000주, K이 75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, 2015년경부터는 I의 주식은 피고 D이 4,450주, 피고 E이 4,000주, 피고 F이 1,550주를 각 소유하고 있고, L의 주식은 피고 D이 4,750주, 피고 E이 4,000주, 피고 F이 1,25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G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던 I 및 L의 주식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는데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따라서 G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I 및 L의 주식양도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난으로부터 양수한 I 및 L의 주식에 관하여 G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3. 판단

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G으로부터 I 및 L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을 제1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L 및 I는 2004. 8.경 M으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면서 '채권보전의 방법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별도로 공증하여야 한다'라고 약정하였는데, 당시 L 및 I의 대표이사는 모두 G이었던 사실, 그 무렵 G은 자신이 소유한 I 및 L의 주식을 모두 M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

따라서 피고들이 G으로부터 I 및 L의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이정현

별지